

10.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

제정일 : 2007년 3월 28일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 발전을 위하여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에 명예총장제를 둘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 명예총장을 말한다.

제3조(임기) 명예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① 명예총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에 관한 특별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다.

② 명예총장은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발전에 관하여 총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.

③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.

제5조(예우) ① 명예총장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. ②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

제6조(추대취소) 명예총장이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, 혹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명예총장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